한국농어촌공사

보도자료

제 공 일 : 2019.07.01
생산부서 : **문경지사 농지은행부**
담 당 자 : 부장 박재관 054)550-5349
담당 윤지연 054)550-5302
쪽 수 : 2 P
별첨자료 :

농지연금으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

- 3만㎡이내의 농지를 소유한 영농경력 5년 이상, 65세 이상의 농업인 대상-

□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(지사장 안영용)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,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

□ 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,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라 할 수 있다.

□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,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㎡ 이하여야 한다.

□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,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.

○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당해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.

□ 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종신형 30명, 기간형 39명,일시일출형 1명, 포함해 총 70명이다.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, 담보로 맡긴 토지를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.

□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'종신형' 과 일부금액을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'일시일출형',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'기간형'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○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,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.

□ 농지연금은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는 평이다.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가입자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,000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.

○ 공사는 또한 빚과 담보, 압류에도 농지연금 수급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농업인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고령농업인의 생계보호대책으로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○ 농지연금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.

(대표전화 1577-7770, 홈페이지 www.fplove.or.kr)

【농지연금 지원요건】

구 분	내 용	비 고
농업인	■ 연 령 : 부부 모두 65세 이상 ■ 영농경력 : 5년 이상	■ 고령농가 기준연령 설정 ■ 일정기간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
농 지	■ 지 목 : 전·답·과수원 ■ 면적제한 : 30,000㎡이하	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